

ESG 위원회 규정

(제정) 2021. 7. 29.

(제정) 2024. 3. 21.

제 1 장 총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롯데이노베이트 주식회사(이하 '회사'라 한다)의 ESG 위원회 (Environmental, Social, Governance 위원회, 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 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2 장 구성 및 권한

제 3 조(구성)

- ①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사외이사의 수가 총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.
- ④ 제 2 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·사임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·의무가 있다.

제 4 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 9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한다. 단, 초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제 3 조 제 3 항은 위원장의 임기에 준용한다.

제 5 조(위원회의 권한)

- ① 위원회는 제 10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, 의결한다.
-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(개최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반기에 1 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

제 7 조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단, 위원장이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 4 조 제 3 항을 준용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 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(소집 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일 1 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 조(결의 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(의결 및 보고 사항)

-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) 전사 ESG 추진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의 수립
 - 2) ESG 경영을 위한 투자의사결정
 - 3)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②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) ESG 전략에 따른 주요 과제의 계획 및 이행 성과
 - 2) ESG 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련된 사항
 - 3)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 11 조(관계인의 출석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 12 조(의사록의 작성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3 조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, 안건의 정리 및 배포, 위원회 의사록의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4 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개폐할 수 있다.

[부 칙]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[부 칙]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